

경상북도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24일, 백순창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백순창 의원

나.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과도한 채무를 상속받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제안이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가 상속되어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지원의 내용과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청소년’과 ‘상속채무’, ‘법률지원’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미만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4조에서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며,
 - 안 제2조제2호는 ‘상속채무’를 ‘「민법」 제1005조1)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로 규정한 것으로, 민법 제1005조의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속채무를 정의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로 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법률지원 정의에서 안 제4조제2호의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상속을 단순승인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사람’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1)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상속채무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시기에 상속을 단순승인한 성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안 제2조제2호의 상속채무 정의에서 아동·청소년을 삭제하여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2조제3호의 법률지원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상속채무”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u>아동·청소년</u> 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
3. (생 략)	----- <u>사람</u> -----

	3. (제정안과 같음)

-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상속을

단순승인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민법 제1041조²⁾, 제1028조³⁾, 제1019조제4항⁴⁾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법률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법률지원기간을 규정하고,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자원봉사자 활용, 비용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법률지원을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함에 따라, 한정승인의 경우 확정을 받은 다음에도 상속재산청산⁵⁾ 등 아동·청소년이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들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원기간을 상속재산청산 등 후속절차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안 제5조제5항에서 지원방법, 절차,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항을 도지사가 임의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인

2)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4)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상속재산청산 절차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재산분배절차(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

권한이나 절차 등을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재량권을 체계적이고 공정한 법률지원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	수정안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u>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u>	제5조(지원내용) ① ----- ----- <u>다음</u> <u>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1. <u>상속포기</u> : <u>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u>
<u><신 설></u>	2. <u>한정승인</u> : <u>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u>
② ~ ④ (생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u>도지사가 정한다.</u>	⑤ ----- ----- ----- <u>규칙</u> <u>으로 정한다.</u>

○ 안 제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다 많은 지원 대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과정에서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왜곡·유포되어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정보해석의 부족, 사실의 왜곡, 사리판단의 부족, 낙인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민간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업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	수정안
<신 설>	<u>제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u>

- 안 제8조는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지원대상의 조기 발굴을 위해 정보제공, 홍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는 2021년에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2022년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시기에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률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 경험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는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정책과 지원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의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의 급증 등은 상속채무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의 내용과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만, 조문간의 법률지원대상이 일관되지 않는 점, 상속재산청산이 법률지원 기간에서 포함되지 않는 점, 개인정보유출 방지 조항 신설 규정 등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 질의1: 안 제2조제2호에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제2호의 지원내용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상속을 단순승인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사람'으로 성인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여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 답변1: 동의함.

- 질의2: 안 제5조제1항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된 이후 상속재산청산 종료까지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답변2: 동의함

- 질의3: 안 제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과 안 제7조는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 위탁에 따른 사실의 왜곡, 낙인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답변3: 동의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불임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년 3월 10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가.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의 지원범위를 상속재산청산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상속채무의 정의에서 아동·청소년을 삭제하여 법률지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상속을 단순승인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상속채무의 범위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에서 한정승인 결정이후 상속재산 청산까지 확대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다. 법률지원의 방법, 절차, 관리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수정안 : 불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6. 수정안 본문 : 불임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아동·청소년”을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가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
까지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
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
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상속채무”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u>아동·청소년</u> 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 ----- ----- <u>사람</u> ----- -----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u>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u>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u>도지사가 정한다.</u>	⑤ ----- ----- ----- <u>규칙</u> ----- <u>으로 정한다.</u>

<신 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생략)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에 대한 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10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